

#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21년 3월 4일  
행정·재무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1년 2월 18일

나. 제안자 : 김현희 의원 외 7명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2월 25일

라. 상정일자 : 제27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
행정·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·의결(2021. 3. 4.)

#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김현희 의원)

#### □ 제안이유

2021년도 무상교육 대상이 고등학교 전학년으로 확대되고“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”이 개정됨에 따라 정비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

#### □ 주요내용

가.“지급대상”,“장학금”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 수정(안 제4조)

나.“추천”장학금 추천 단체를 현행에 맞게 수정 (안 제5조)

다.“심사”,“지급시기”조항을 현안에 맞게 수정(안 제6조, 안 제8조)

라.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맞춤법 및 띄어쓰기 정비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
나. 협조부서 : 자치행정과

다. 입법예고(2021.2.19.~2021.2.24.) 결과 : 의견없음

### 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최광호)

가. 개정 취지

- 「초·중등교육법」 개정으로 고등학교 무상 의무교육이 2021년도 전면 시행되고, 「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」이 개정됨에 따라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급대상 및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 내용

○ 장학금 지급 대상 변경 (안 제4조제1항)

- 새마을지도자 자녀를 “고등학생”에서“대학생”으로 변경

○ 장학금 신청기준 변경(안 제4조제2항)

- “1명에 대하여 1회(2분기분)”를 “1명당 1회(한 학기분)”로 변경

○ 다른 장학금 지원 시 등록금 총액 초과 금지 (안 제4조제2항)

- 다른 장학금 지원 시 “지급 제외”에서 “한 학기 등록금 총액초과 제한”으로 변경

○ 장학생 추천 단체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(안 제5조)

-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 새마을운동강서구 협의회장(이하 “구협의회장”이라 한다)과 강서구 새마을 부녀회장(이하 “구부녀회장”이라 한다)에서 “새마을 운동조직”으로 변경

○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맞춤법 및 띄어쓰기 정비  
(안 제2조제4호, 안 제3조제1항·제2항, 안 제4조제2항, 안 제5조, 안 제6조제1항, 안 제7조, 안 제9조제1항, 안 제10조, 안 제14조)

다. 종합 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<sup>1)</sup> 개정으로 2021년도부터 고등학교 무상의무 교육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성실히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의 장학금 지급 대상과 지급 기준 등을 실효성에 있게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,

- 안 제4조제1항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을 “고등학생에서 대학생”으로
- 안 제4조제2항에서는 장학금 신청기준 및 다른 장학금 지급 조항을 “1명당 1회(한 학기분)”로 한정하여 장학금 혜택이 특정회원에게 편중되지 않고 다양하게 확대될 수 있도록 정비하였고,  
·다른 장학금 혜택을 받는 경우 확일적으로 지급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

1) 제10조의2(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)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(無償)으로 한다.

1. 입학금
2. 수업료
3. 학교운영지원비
4. 교과용 도서 구입비

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, 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9. 12. 3.]

[시행일]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순차적으로 시행

1. 2020학년도: 고등학교 등 2학년 및 3학년의 무상교육
2. 2021학년도 이후: 고등학교 등 전학년의 무상교육

- 대상자의 불이익을 초래한 조항을 개정하여, 등록금 총액을 초과하지 않게 지급할 수 있는 세부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
- 안 제5조에서는“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 새마을운동강서구 협의회장(이하“구협의회장”이라 한다)과 강서구 새마을 부녀회장(이하 “구부녀회장”이라 한다)를 현행 법령 체계에 따라 “새마을운동조직”으로 정비하였음

- 이번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「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을 반영한 것으로 “새마을지도자의 중고교 자녀에 대한 장학금”을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구체화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 내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사료됨.

## 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## 6. 토론요지: 생략

## 7. 심사결과: 수정가결

## 8. 수정안의 요지

### 가. 수정이유

- 장학금 지급이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수정함.

### 나. 수정내용

- 안 제4조제2항의 단서조항을 현행대로 함. (붙임 수정대비표 참조)

※ 붙임 관계 법령 1부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4조(장학금 지급대상) ①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에 봉사하면서 공이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<u>고등학생</u> 자녀와 새마을 사업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 지도자의 <u>고등학생</u>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② 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회(2분기분)에 한하여 1명의 자녀만 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지도자자녀 장학금 이외에 다른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</p>	<p>제4조(장학금 지급대상) ① ----- ----- ----- <u>대학생</u> ----- ----- ----- <u>대학생</u>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1명당 1회(한 학기분)에 한정하여 ----- ----- . 다만, 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한 학기분 등록금 총액에서 이미 지급된 다른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</p>	<p>제4조(장학금 지급대상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. 다만, <u>지도자자녀</u> 장학금 이외에 다른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</p>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

현 행		개 정	
301 일반 보전금	<p><b>02. 장학금 및 학자금</b></p> <p>1.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(국고대여장학금은 제외)</p> <p>가. 통·리장 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에 의한 통·리장 자녀장학금</p> <p>1) 적용대상 : 통·리장의 자녀 중 중,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</p> <p>2) 지급액 :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고시에 의한 기준 공납금</p> <p>나.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에 의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</p> <p>1) 적용대상 : 조례규정에 의거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중,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</p> <p>2) 지급액 :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고시에 의한 기준 공납금</p> <p>다.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</p>	301 일반 보전금	<p><b>02. 장학금 및 학자금</b></p> <p>1.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(국고대여장학금은 제외)</p> <p>- 통·리장 자녀, 새마을지도자 자녀 등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등에 대해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(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고시에 따른 기준 공납금 참고)</p>